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03
----------	-----

2023년 4월 2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김지향 의원 외 53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4월 27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지향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확대 등으로 국내 1회용품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서울시의 탄소배출량은 2007년 대비 2019년에 8.2% 밖에 줄이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간(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골자

-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4조제2항제5호 신설).
-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4조제3항 신설).
- 장례식장, 배달업종 등의 1회용품 사용 억제와 다회용품 사용 권고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구체화 및 다회용품 활용 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67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를 마련함
(안 제7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피재황)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1회용품 줄이기 관련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안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진계획*에 포함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소관 상임위 보고 규정 신설
안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책무 신설 -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다회용품 사용 권고
안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 - 음식물 포장 및 배달 등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사업 -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규정 신설

나. 검토 의견

- 안 제4조제2항제5호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 계획”)에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이고, 안 제4조 제3항은 추진계획 및 실적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추진계획이 좀 더 내실 있게 시행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제4항은 시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

용품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음.

다만, 현행 제6조는 1회용품 사용 제한(억제)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고, 안 제6조제4항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품 사용을 시장이 사업자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이 불일치하는바 수정이 필요할 것임.

또한,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서 이미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무상 제공 금지에 관한 책무(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안 제6조제4항과 같이 사업자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구청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장례식장,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2.~6. (생략)

②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4. (생략)

- 안 제7조는 조 제목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음식물 포장·배달 1회용품 저감 사업과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을 포함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서울시는 위의 사업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바,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다만, 1회용품 저감 등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감량 책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형태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폐기물관리법」 상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① 사업자는 제품의 생산방식 등을 개선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7조(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안 제6조제4항은 상위법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를 시장이 중복해서 규정한 것으로 이는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님. 또한 1회용품 저감 등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감량 책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형태로 일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바 안 제7조제3항의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03
----------	-----------

제안년월일: 2023년 4월 27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에서 이미 부여하고 있는 사업자의 책무를 시장이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며, 1회용품 저감 등을 위한 시장의 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상의 폐기물 감량 책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마중물 형태로 일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안 제6조제4항과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1회용품 저감 사업에 포장재 사용 저감 사업을 포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포장재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4호).
-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삭제함(안 제6조제4항).
- 시장의 지원사업에 포장재 사용 저감 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
- 1회용품 저감 사업의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p>	<p>제2조(정의) ----- ----- -----.</p> <p>1. ~ 3. (개정안과 같음) 4. <u>“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u></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p> <p>① (생략)</p> <p>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4. (생략) <u><신설></u></p> <p>5. (생략) <u><신설></u></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4. (현행과 같음) 5. <u>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u>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u>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p> <p>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p>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u></p>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p> <p>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삭제></u></p>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
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
나 제공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2. (생략)

<신설>

<신설>

3. (생략)

② (생략)

<신설>

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
을 권고할 수 있다.

⑤ ----- 제4항-----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
항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

1.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 포장·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저
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
치 및 운영 사업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
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
한 조례」를 따른다.

④ ----- 제3항-----

⑤·⑥ (개정안 제6항 및 제
7항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

1. 2. (개정안과 같음)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5.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삭제>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

제4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교육 및 홍보 등)”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
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포장재”란 제품의 수송, 보관, 취급, 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나 용기 등을 말한다.</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 략)</p> <p>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5. (생 략)</p> <p>〈신 설〉</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③ 시장은 전년도 추진계획의 실적과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1회용품 및 포장재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p> <p>4.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p> <p>5.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